

해외산림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공고

산림청 공고 제2019 - 123호
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9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5일
산림청장

2019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(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사업)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

1. 집행계획

보조 대상사업	예산액 (천원)	보조대상자
○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사업	651,000	한국임업진흥원
- 바이오매스 육림 및 벌채	346,000	
- 양묘장 및 조림지 운영관리	125,000	
- 사업지 모니터링	45,000	
- 컨설팅 및 교육훈련	135,000	

2. 지급기준 등

가. 보조대상자

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

나. 보조대상 사업비

- 해외 목재바이오매스 육림(벌채)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- 양묘장 및 조림지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
-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사업 실행지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해외산림투자 컨설팅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-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다. 보조비율

- 보조 대상 사업비의 100%

라. 보조 사업 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

- 사업 기간 : 2019. 1. 1 ~ 2019. 12. 31.
- 보조금 지급 및 반납 등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마. 보조금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

-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동 기준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시에도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